

**제1770호**

2020. 7. 30.(목)

발행인 : 영등포구청장  
편집인 : 흥보미디어과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화 : 02-2670-7561

# 영등포구보

**입법예고**

- 제2020-127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고 시**

- 제2020-149호 도로명주소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 고시 ..... 13  
· 제2020-151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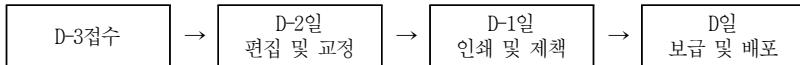
**공 고**

- 제2020-1245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 2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영등포소식→새소식→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670-7561 / 전송: 02-2670-3581)
-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 영등포구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244-0069-2020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27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복무 조례에 반영하여 연가 사용 활성화, 특별휴가제 개선 및 연가제도 운영기준 정비를 통해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형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개선

###### 1) 임신검진휴가 확대

- 여성공무원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 2) 유산휴가·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휴가를 주도록 함.(안 제24조 제5항)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함.(안 제24조 제6항)

###### 3) 자녀돌봄휴가 부여와 가산일수 적용(안 제24조제18항)

- 2자녀 이상인 경우 1일을 가산한 연간 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4) 직원 자기계발 휴가 부여(안 제24조제19항)

-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월에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제도 개선

###### 1) 연가 가산 제도 개선(안 제18조제2항)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도 그 다음해에 1일의 연가 가산

- 교육훈련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서 제외함.

###### 2) 연가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연가제도 개선

-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20조제7항)

- 연가보상비의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를 10년의 범위에서 이월·저축이 가능하도록 연가의 저축  
제도 도입(안 제20조의4)

다. 연가제도 운영기준 정비

- 1) 연가사용 권장을 위한 조치 기간 확대(안 제20조의3)
- 2)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토요일·공휴일을 산입하도록 함.(안 제2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참조: 총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화: 2670-3327, 팩스: 2670-35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을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21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병가”를 “병가(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의2 중 “일수가”를 “일수(제20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를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를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9월 30일”을 “10월 31일”로 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1조제1항 본문 중 “연가일수”를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0조의4에 따른 저

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제23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임신기간이 12주 이상”을 “임신기간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⑮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⑯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자기계발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의2 중 “제21조제3항·제4항”을 “제20조의3 제1항·제2항, 제21조의제3항·제4항”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3항”을 “제22조”로 한다.

제25조 단서 중 “휴가일수가”를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단서 중 “휴가일수가 15일”을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로 하고, 제2호가목 단서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라.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장 연가 일수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권장연가일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9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연가일수) ① (생 략)  ②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 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 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생 략)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결근·정직·강등·직위 해제 사실 및 제21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 ----- ----- -----  1. 병가(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⑥ (생 략)  <u>&lt;신 설&gt;</u>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8조제 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0조의 4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 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 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 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의2(연가 당겨쓰기) 소속 기관 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8조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 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제20조의2(연가 당겨쓰기) ----- ----- 일수(제20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

<p>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20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u>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u> 정해 공지해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20조 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p> <p>1. 매년 <u>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u>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p> <p>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u>9월 30일까지</u>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p>	<p>----- ----- -----.</p> <p>제20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 ----- ----- 10일 <u>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u></p> <p>② ----- ----- ----- ----- -----.</p> <p>1. --- <u>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 ----- ----- ----- ----- -----.</u></p> <p>2. ----- ----- ----- 1 <u>0월 31일----- ----- ----- ----- -----.</u></p>
--	---

## &lt;신 설&gt;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 ·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 · 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 · 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 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 정직일수 ·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

-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0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 ----- .

-----

----- .

<단서 신설 2019.06.28.>

② ~ ④ (생 략)

⑤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 교육 훈련 기간

5. · 6. (생 략)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또는 「결핵 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을 때

6. ~ 12. (생 략)

제24조(특별휴가) ① · ② (생 략)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5. · 6. (현행과 같음)

제 2 3 조 ( 공 가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

-----

-----

6. ~ 12.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

④ (생 략)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 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4. (생 략)

5. (생 략)

<신 설>

⑥ (생 략)

⑦ ~ ⑨ (생 략)

⑩ ~ ⑯ (생 략)

<신 설>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삭 제>

1. 임신기간이 -----

2. 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 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7. (현행 제6항과 같음)

8. ~ 10. (현행과 같음)

11. ~ 17. (현행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음)

18.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p><u>&lt;신 설&gt;</u></p> <p>제24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p> <p>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p> <p>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p> <p>⑯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자기계발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다.</p> <p>제24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 제20조의3 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 제2 항 2 조 ----- .</p> <p>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 .</p>
---	--

## [별표5]

## 1. 휴가일수 계산 등

## 가. (생 략)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 다. (생 략)

##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 다. (생 략)

<신 설>

## [별표5]

## 2. 휴가일수 계산 등

## 가. (현행과 같음)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 다. (현행과 같음)

##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 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장 연가 일수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 한다.

$$\frac{\text{「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권장연가일수}}{\text{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8}$$

##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49호

## 도로명주소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고 시 일 : 2020. 07. 30.
2. 고시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고시대상

총 계 (구 간)	위 계 구 분				비 고
	대로	로	길	기타 (종속구간)	
27	-	-	7	20	변경 3 폐지 24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02-2670-3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 조서 1부. 끝.

&lt;붙임&gt;

## □ 도로구간 변경 조서(대림3주택재건축)

일련 번호	구분	도로명	도로 구분	관찰 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유사도로명	변경사유	비고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1	변경전 변경후	3길			신길동 4665	대림동 911-54	별첨도면	118	6	20	1	12
2	변경전 변경후	신길로9길	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665	대림동 909-3	별첨도면	190	6	20	1	18
3	변경전 변경후	신길로7길	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671	대림동 911-54	별첨도면	147	4	20	1	14
					신길동 4671	대림동 918-19	별첨도면	119	4	20	1	12
					신길동 4665	대림동 911-54	별첨도면	177	4	20	1	18
					신길동 4665	대림동 918-19	별첨도면	85	4	20	1	8

## □ 도로구간 및 도로명 폐지 조서(대립3주택재건축)

일련 번호	도로 명	도로 구분	관찰 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 시작번호	기초번호 종료 번호	폐지사유	비고
				시작지점	끝지점	증설선	길이 (m)				
계	24번										별호
1	디지털로74길	길 1차종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911-54	대립동 924-1	별첨도면	14	4	10	2-4	대립3주택재건축
2	디지털로74길	길 1차종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911-54	대립동 911-54	별첨도면	31	4	10	12-1	대립3주택재건축
3	디지털로74길	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911-33	대립동 911-54	별첨도면	192	6	20	1	18
4	디지털로 1차종속	로 1차종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909-3	대립동 911-54	별첨도면	34	4	10	436-1	436-6
5	디지털로 1차종속	로 1차종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909-3	대립동 911-54	별첨도면	36	4	10	446-1	446-6
6	신길로9가길	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911-54	대립동 923-14	별첨도면	170	4	20	1	18
7	신길로9가길	길 1차종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911-55	대립동 911-55	별첨도면	30	4	20	5-1	5-4
8	신길로9길	길 1차종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911-25	대립동 911-37	별첨도면	71	4	12	9-1	9-12
9	신길로9길	길 1차종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911-25	대립동 911-37	별첨도면	74	4	12	7-1	7-12
10	신길로9길	길 1차종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911-56	대립동 912-38	별첨도면	43	3	10	3-1	3-8

11	신길로7길	길 1차종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917-1	대립동 917-1	별첨도면	32	4	20	13-1	13-4	태립3주택재건축	11
12	신길로7길	길 1차종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911-37	대립동 918-19	별첨도면	32	4	10	7-1	7-6	태립3주택재건축	12
13	신길로5길	길 1차종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917-1	대립동 917-1	별첨도면	30	4	20	13-1	13-4	태립3주택재건축	13
14	신길로5길	길 1차종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918-19	대립동 918-32	별첨도면	32	4	10	7-1	7-6	태립3주택재건축	14
15	신길로3길	길 1차종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917-1	대립동 919-38	별첨도면	71	6	10	13-1	13-14	태립3주택재건축	15
16	신길로3길	길 1차종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918-32	대립동 917-1	별첨도면	82	6	12	7-1	7-14	태립3주택재건축	16
17	신길로3길	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665	대립동 917-47	별첨도면	163	6	20	1	16	태립3주택재건축	17
18	디지털로70가길	길 1차종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911-54	대립동 923-41	별첨도면	30	4	20	7-1	7-4	태립3주택재건축	18
19	디지털로70가길	길 1차종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911-54	대립동 923-30	별첨도면	23	4	10	5-1	5-6	태립3주택재건축	19
20	디지털로70가길	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942-7	대립동 911-54	별첨도면	165	4	20	1	18	태립3주택재건축	20
21	디지털로70가길	길 1차종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922-11	대립동 922-11	별첨도면	108	4	10	12-1	12-22	태립3주택재건축	21
22	디지털로70가길	길 1차종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922-11	대립동 922-11	별첨도면	75	4	10	8-1	8-16	태립3주택재건축	22
23	디지털로70길	길 1차종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942-7	대립동 922-11	별첨도면	50	4	10	17-1	17-10	태립3주택재건축	23
24	디지털로70길	길 1차종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942-7	대립동 942-35	별첨도면	65	4	10	21-1	21-14	태립3주택재건축	24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중심선(대림3주택재건축)

변경전



변경후



## □ 도로구간 및 도로명 폐지 중심선(대림3주택재건축)

대림3주택재건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51호

##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510(신길동) 외 9건

####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2)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 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고시일 : 2020.7.30.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42, 242-2, 242-45, 242-193, 242-19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510 (신길동)	2020-07-30	2009-07-10	가마고지라는 옛지명 활용	신규 부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83-1, 79-7, 8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2길 4 (영등포동7가)	2020-07-30	2010-06-17	국회대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신규 부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17-49 외 271필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29 (대림동, e편한세상 영등포 아델포레)	2020-07-30	2010-05-27	신길동 동명칭 인용	신규 부여

## ■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폐지고시일 : 2020.7.30.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고시일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40(신길동)	2020-07-27	2020-07-30	대장 말소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67-1(신길동)	2020-07-27	2020-07-30	대장 말소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67(신길동)	2020-07-27	2020-07-30	대장 말소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7가길 6-1(신길동)	2020-07-27	2020-07-30	대장 말소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175길 15-3(대림동)	2020-07-27	2020-07-30	대장 말소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52길 6(대림동)	2020-07-27	2020-07-30	대장 말소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40가길 6(대림동)	2020-07-27	2020-07-30	대장 말소

##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245호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호 (대표자)	명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1	서울영등포 제3-1-13호 (2020년)	태창이엔피(주) 이금철	TC-U-3H-32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상부승입식 32대형 【수용차량: 중량 2200kg, 길이 5.2m, 높이 1.85m, 폭 2.15m 0 0】	2020. 07.20.
2	서울영등포 제8-1-14호 (2020년)	죽신우유비코스 김문재	SWCT-F2L5C-5HS-SA145-3	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종식) 145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0 0】	2020. 07.20.
3	서울영등포 제8-1-15호 (2020년)	국제기공(주) 이종대	KJ-CH5-155-2L	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종식) 155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0 0】	2020. 07.20.

○ 문의: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 02-2670-4286